

課總 5-11  
課個 7-4  
課資 5-61  
課法 4-48  
課酒 1-62  
課消 4-26  
課審 1-43  
官總 9-7  
官稅 127  
査調 2-69

2012년 9월 12일

개정 2014년 4월 3일

개정 2015년 4월 15일

각 국세국장 전  
오키나와 국세사무소장 전

국세청장관

조사수속 시 기본적인 사고방식 등에 관하여 (사무운용지침)

위의 건에 대하여 별책대로 정해져 있으므로 2013년 1월 1일 이후는 이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토록 한다.

(취지)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세제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1년 법률제 114호)을 공포(2011년 12월 2일) 하므로써, 국세통칙법(1962년 법령제 66호)의 일부가 개정되어, 국세조사에 관한 규정(제7장의 2)이 신설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한 조사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수속시 기본적인 사고방식 등을 정한 것이다.

[별책] 조사수속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등에 관하여

## 제 1 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조사수속에 관해서는, 2011 년 12 월에 국세통칙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의 일부분이 개정되어, 절차의 투명성 및 납세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 협력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조사의 실시와 신고납세제도를 한층 충실·발전시키는점 및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종래 운용상의 취급이 법령상 명확하게 되었다.

조사실시에 있어서, 이번의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실현한다」는 국세청의 사명을 적절히 시행하는 관점에서, 조사가 그 공익적 필요성과 납세자의 사적이익과의 형량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조사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 제 2 장 기본적인 사무절차 및 유의사항

### 1 조사와 행정지도의 구분의 명시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조사 또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면, 전화, 서면 등의 양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무로써 행하는가를 명시하고, 각각의 행위를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히 행한다.

(주)

1 조사란, 국세 (법제 74 조의 2 에서 법제 74 조의 6 까지에 제기하는 세목에 한한다.)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특정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등을 인정하는 목적 그외에 국세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처분을 할 목적으로 당해 직원이 행하는 일련의 행위 (증거자료의 수집, 요건사실의 인정, 법령의 해석적용 등) 를 의미하는 것임을 유의한다 ( 「수속통칙」 (2012년 9월 12일부 과총 5-9 외 9 과 공통 「국세통칙법 제 7 장의 2 (국세조사) 관계통칙」 (법령해석통칙) 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

2 당해 직원이 하는 행위가, 특정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등을 인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는 것은 조사행위가 아니다. (수속통칙 1-2)

### 2 사전통지에 관한 절차

#### (1) 사전통지 실시

납세의무자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의 쌍방에 대해, 조사개시일 전까지 상당한 여유를 두고,

전화 등으로 법제 74 조의 9 제 1 항에 의거 실지조사시 질문검사 등을 한다는 뜻과 동항 각 호 및 국세통칙법 시행령 제 30 조의 4 에서 규정한 사항을 사전통지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에 앞서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의 사정을 청취하여 필요시 조사일정을 조정하고, 사전통지 해야할 조사개시일시를 결정하는 점을 유의 한다.

또한, 사전통지시에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해 통지사항이 정확하게 전달 되도록 알기쉽고 정중한 통지가 되도록 노력한다

(주)

1 납세의무자에게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세무대리 권한증서에, 당해 납세의무자에의 사전통지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해 행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의 사전통지는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다는 점에 유의한다.

2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들 세무대리인들이 제출한 세무대리권한증서에, 대표하는 세무대리인의 정해져 있는 때에는 이들 세무대리인에의 사전통지는 당해 대표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지만, 당해 대표 세무대리인 이외의 이들 세무대리인 (이하 「다른 세무대리인」 이라 한다.) 에의 사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다른 세무대리인에 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당해 대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유의한다.

3 납세의무자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로부터 사전통지할 상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요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사를 한다는 것만을 통지하고, 그외 통지사항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통지하여도 지장이 없음을 유의한다 (수속통칙 7-1) .

(2) 조사개시일시 등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의 절차

사전통지를 행한 후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사개시일 전에 합리적인 이유로 사전통지한 조사개시일 또는 조사개시장소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개개의 사안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적이익과 실지조사의 적정하면서도 원활한 실시의 필요성이라는 행정목적과의 비교형량 한 후, 변경여부를 적절히 판단 한다.

(수속통칙 4-6) .

(주) 세무대리인의 사정에 의해, 조사개시일시 또는 조사개시장소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로 취급하는점을 유의한다 (수속통칙 7-2) .

(3) 사전통지를 행하지 않은 경우의 절차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고 혹은 과거의 신고 혹은 과거의 조사결과의 내용 또는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관한 정보 그밖에 국세청, 국세국 또는 세무서가 그 시점에 보유한 정보에 비추어

- 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정확한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의 파악을 곤란하게 할 우려
- ② 그 밖에 국세에 관한 조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를 앓는 것에 관하여는 법령 및 수소통칙에 의거, 개개 사안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적법성을 적절히 판단한다 (수속통칙 4-7,4-8,4-9,4-10) .

(주)

1 복수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개의 납세의무자마다 판단하는 것에 유의한다.

2 사전통지뿐만 아니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현장조사후 신속하게 「조사목적」,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장부 그밖의 물건」, 「조사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담당자의 성명과 소속관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조사목적,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도중에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질문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납세의무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서 조사를 개시함을 유의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후 신속하게 이러한 사항을 통지하는 점을 유의한다.

### 3 조사시의 절차

#### (1)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 등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분증명서 및 질문검사장을 반드시 휴대하며, 질문검사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게 제시하여 조사를 위하여 방문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후에 조사에 대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고서 질문검사 등을 한다.

(주) 행정지도의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사업소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신분증명서를 휴대·제시하고 행정지도로 방문한 뜻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 한다.

#### (2)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지조사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통지한 사항(위 2(3)주 2 에 규정한 경우 통지사항을 포함)이외의 사항에 대해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조사대상에 추가하는 세목, 기간 등을 설명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어서 조사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검사 등을 한다.

(3) 질문조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대리인 등에의 질문검사 등

조사에 관해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에 대해 질문검사 등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당해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다.

(4)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의 제시·제출요구

조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 등이 상대방이 되는 자에 대해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사본을 포함한다.)의 제시·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 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자의 이해와 협력아래 승락을 얻어서 한다.

(주)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 대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해 비밀준수에 관한 규정(예:의사 등의 비밀준수의무)이나 조사 등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관한 규정(예:종교법인법 제 84 조)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검사 등을 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유의한다.

(5) 제출받은 장부서류 등의 유치

제출받은 장부서류 등의 유치는,

- ①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조사를 할 공간이 없어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② 장부서류 등의 사본의 작성이 필요하지만 조사처에 복사기가 없는 경우
- ③ 상당한 분량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사업소 등에서 당해 상대방이 되는 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 설명 등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세무서나 국세국내에서 당해 장부 등에 의거하여 일정한 검사가 가능하여,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부담이나 신속한 조사실시 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 어쩔수 없이 유치가 필요한 경우나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부담경감의 관점에서 유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의 이해와 협력하에, 승락을 얻어 실시한다.

또한, 장부서류 등을 유치 시 별도로 정한 서면(이하「보관증」이라 한다)에 당해 장부서류 등의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에 제출한 자에게 교부한다.

또한, 유치한 장부서류 등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문서 및 개인정보의 누설 등 방지도 주의하여 관리한다.

추후에 유치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한「보관증」과 교환으로 유치한 장부서류 등을 반환한다.

(주)

1 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부터 장부서류 등의 반환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신속히 반환하는 것에 유의한다.

계속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어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불복신청에 관한 교시를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한다.

2 「보관증」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서면이므로, 「보관증」을 교부할 때에는 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 교부송달의 절차로서 서명·날인을 하는 것에 유의한다.

3 「보관증」과 교환하여 유치된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장부서류 등을 반환한 사실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보관증」에 반환받은 뜻을 기재 및 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음을 유의한다.

이 경우 장부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부터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다는 뜻을 기재에 대신하여 반환이 필요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받는 것에 유의한다.

(6) 반면조사의 실시

거래처 등에 대한 반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과 반면조사처에의 사전연락의 적부를 충분히 검토한다.

(주) 반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면조사인 뜻을 거래처에 명시하고 실시하는 것에 유의한다.

(7) 증거의 수집·보전과 정확한 사실인정

조사과정서 신고내용 등에 관해 비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파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그 사항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 그 의견 또는 주장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의 설명내용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의 수집·보전을 한 후에 정확한 사실인정을 하고, 법제 74 조의 11 제 2 항에 근거하여 조사결과 내용설명 대상이 되는 경정결정 등을 해야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인지 여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한다.

4 조사를 종료할 때의 절차

(1) 경정결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통지

실지조사의 결과, 경정결정 등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세목,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 74 조의 11 제 1 항에 의거, 질문검사 등의 상대방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세목,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주) 실지조사 이외의 조사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문검사 등을 하여, 그 결과 조사대상이 된 전부의 세목, 과세기간에 있어 경정결정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내용을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조사가 종료되었다는 뜻을 구두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연락한다.

## (2) 조사결과 내용설명 등

조사결과, 경정결정 등을 해야한다고 인정되는 비위가 있는 경우 법 제 74 조의 11 제 2 항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비위의 내용 등 (세목, 과세기간, 경정결정 등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금액, 그 이유 등) 에 관해 원칙적으로 구두로 설명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비위의 항목이나 금액을 정리한 자료 등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이해를 위해 충분히 설명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질문 등이 있는 경우 알기 쉽게 답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아울러 납부할 금액 및 가산세 외에 납부할 세액에 따른 연체세의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당해 조사 결과의 내용의 설명 등 (아래(3)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등의 권장을 하는 경우, 수정신고 등의 권장 및 수정신고 등의 법적효과의 교시를 포함한다.) 으로 원칙적인 일련의 조사절차가 끝난다는 뜻을 설명한다.

(주)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조사 (실지조사 이외의 조사) 를 행한 결과에 관해, 경정결정 등을 해야한다고 인정되는 비위사항이 적고, 비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므로써 그 내용에 관해 납세의무자의 이해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간단한 것인 경우, 구두에 의한 설명에 대신하여 서면에 의하여 조사결과 내용을 설명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유의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사결과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알기쉽게 답하는 것에 유의한다.

## (3) 수정신고 등의 권장

납세의무자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해야한다고 인정되는 비위의 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이하 「수정신고등」 이라 한다.) 를 권장한다.

또한, 수정신고 등을 권장하는 경우 당해 조사결과에 관해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 (이하 「수정신고서 등」 이라 한다.) 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복신청은 할 수 없지만 경정청구는 가능하다는 뜻을 확실히 설명 (이하 「수정신고 등의 법적효과의 교시」 라 한다) 함과 동시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 (이하 「교시문」 이라 한다.) 을 교부한다.

(주)

1 교시문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부하는 문서이므로, 교시문을 대면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해 교부송달의 절차로서의 서명·날인을 받는 점을 유의한다.

2 서면을 송부하므로써 조사결과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권장하는 때에는 교시문을 동봉하는 것에 유의한다.

또한, 이 경우 교부송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시문의 수령에 관해서 납세의무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할 필요는 없음에 유의한다.

#### (4) 조사결과 내용 설명 후의 조사의 재개 및 재차 설명

상기(2)의 조사결과 내용설명을 한 후, 당해 조사에 관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정신고서 등의 제출 혹은 원천징수에 관한 소득세의 납부가 있기까지 또는 경정결정 등을 하기까지는 당해 조사결과 내용설명의 전제가 된 사실이 상이한 것이 명확히 되어 당해 조사결과 내용설명의 근거가 상실된 경우 등 당해 조사결과 내용설명에 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재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조사결과 내용을 설명 한다 (수속통칙 5-4) .

또한, 조사결과 내용설명의 근거가 상실된 경우란, 납세의무자로부터 새로운 증거의 제시가 있어 당해 조사결과 내용설명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상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5)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조사결과 내용설명 등

실지조사에 경정결정 등을 해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뜻의 서면통지, 조사결과 내용설명, 수정신고 등의 권장, 수정신고 등의 법적효과의 교시 및 교시문의 교부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해 당해 통지 등을 할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동의 유무확인은,

- ①전화 또는 현장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 ②세무대리인으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뜻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방법

의 어느쪽이던 관계없다.

(주) 실지조사 이외의 조사에 있어서도, 실지조사의 경우에 준해서,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해 조사결과 내용설명, 수정신고 등의 권장, 수정신고 등의 법적효과의 교시 및 교시문을 교부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다만, 실지조사 이외의 조사에 있어, 상기 ① 또는 ②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동의를사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설명을 받는 것에 대해 위임되어 있는 뜻의 신청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유의 한다. (수속통칙 7-3)

#### (6) 재조사의 판정

경정결정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후 또는 조사 (실지조사에 한한다)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정신고서 등의 제출 혹은 원천징수에 관한 소득세의 납부가 있는 후 혹은 경정결정 등을 한 후에,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된 세목, 과세기간에 대해 질문검사 등을 한 후에, 새로이 얻은 정보에 비추어 비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령 및수속통칙에 근거하여, 개개의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적법성을 적절하게 판단한다. (수속통칙 5-7, 5-8, 5-9)

#### (7) 그 외

조사 시, 앞으로의 신고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하여 지도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장래에 걸쳐 스스로 적정한 신고, 납세 및 장부서류의 구비 등이 되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 5 이유부기 실시

행정절차법 제 2 장에 규정하는 신청에 관하여 거부처분 또는 동법 제 3 장에 규정하는 불이익처분 (동법 제 3 조제 1 항에 규정한 사항 제외) 을 행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동법 제 8 조 또는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유의 제시(이유부기) 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적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처분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 불복신청시 도움이 되도록 이유부기 취지가 확보 되도록 적절히 한다.

(주) 소득세법 제 155조 (청색신고서 관한 경정) ,법인세법 제130조 (청색신고서 등에 관한 경정) 등 각 세법에 이유부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관해서는 종전대로 당해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히 이유부기를 하는 것에 유의한다.

## 조 사 상 황

### 【신고소득세 실시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건수	신고누락건수	신고누락 소득금액		추징세액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천건 62	천건 51	억엔 4,137	만엔 671	억엔 696	만엔 113

### 【원천소득세 실시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건 수	비위건수	추징세액
천건 117	천건 32	억엔 254

※2013년1월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한 추징세액에는 부흥특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 실시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구분	건수	신고누락건수	신고누락소득금액		추징세액
			1건당	1건당	
법인전체	천건 91	천건 66	억엔 7,515	만엔 829	1,591
조사과소 관법인	3	2	3,215	11,845	678

### 【소비세 실시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구분	건수	신고누락건수	추징세액	
			1건당	1건당
개인	천건 32	천건 26	억엔 169	만엔 53
법인	87	49	378	44

### 【상속세 실시조사 상황】

(2013사업연도)

건수	신고누락건수	신고누락과세가격		추징세액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천건 12	천건 10	억엔 3,087	만엔 2,592	억엔 539	만엔 452

### 【법정자료 수집매수】

(2013사업연도)

법정자료	수집매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천매 20,101
이자 등의 지급조서	1,089
배당 등의 지급조서	87,952
기타	211,611
합계	320,753

## 査 察

### 【세무사찰 상황】

(2014연도)

착수 건수	처리 건수	고발 건수	탈세액(총액)		탈세액(고발분)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천 194	천 180	천 112	억엔 150	백만엔 83	억엔 123	백만엔 110

### 【범칙사안 상황】

(2014연도)

고발건수	그 중 탈세액 3억엔 이상	그 중 탈세액 5억엔 이상
천 112	천 6	천 1

### 【고발사건의 세목별 상황】

(2014연도)

세 목	건 수	탈세액(총액)	
		1건당	1건당
소득세	천 18	억엔 18	백만엔 102
법인세	69	75	109
상속세	2	5	244
소비세	13	11	87
원천소득세	10	14	137
합계	112	123	110

## 권 리 구 제

### 【이의신청 상황】

(2013연도)

구분	이의신청건수	신규신청건수 ①	처리필 건수 ②	청구용인건수 ③		비율③/②
				전부	일부	
과세관련	천 2,770	천 2,002	천 2,183	252	천 73 / 179	% 11.5
징수관련	404	356	351	1	1 / 0	0.3
합 계	3,174	2,358	2,534	253	74 / 179	10.0

【심사청구 상황】

(2013연도)

구분	심사청구건수	신규청구건수 ①	처리필 건수 ②	청구용인건수 ③		비율③/②	
				전부	일부		
과세관련	5,388	2,700	2,907	226	68	158	7.8
징수관련	255	155	166	10	5	5	6.0
합 계	5,643	2,855	3,073	236	73	163	7.7

【소송사건 상황】

(2013연도)

구분	소송건수	제1심 제기건수 ①	종결건수 ②	패소건수 ③		패소비율③/②	
				전부	일부		
과세관련	524	99	267	22	14	8	8.2
징수관련	97	33	57	2	1	1	3.5
심판소관련	6	2	4	-	-	-	-
합 계	627	134	328	24	15	9	7.3

※소송사건 계수는 심급별로 합계한 계수입니다.

【출처】

국세청 리포트 2015